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정배분 대상에 접경지역지원기금 추가〉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99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접경지역지원기금 추가 (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2.

다. 회 부 일 : 2024.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점경지역지원기금 추가 (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기관·기금 - <신설>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현행과 같음) - 점경지역지원기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의 기관·기금 등에 배분¹⁾하도록 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권기금 지원사업비의 배분 및 용도]

(단위: 억원)

구분	2025년도 계획액	용도
법정배분사업	11,051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 ·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 지방자치단체 지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공익사업	21,199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 소외계층 복지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문화·예술 진흥사업

※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추가하여 접경지역²⁾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접경지역지원기금 개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 분	내 용
기금의 설치 (안 제27조의2제1항)	접경지역 발전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
기금의 재원 (안 제27조의2제2항)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5.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기금의 운용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안 제27조의2제4항)	1. 농어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 2. 전기·통신·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3.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개발 5.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 6. 교육·의료·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7. 민방위 정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이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

현재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개 시·군(춘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속초·가평) 등 17곳이
접경지역으로 지정³⁾되어 있음.

3) 기존 15곳이었으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2025.3.11. 개정되어 ‘경기 가평군, 강원 속초시’ 2곳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17곳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추가하여 동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접경지역은 남북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립 및 긴장 등 정치·지리적 여건과 더불어 군사시설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로 토지이용규제 비율이 접경지역 시·군면적 대비 140%를 차지하는 등⁴⁾ 토지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접경지역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령인구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해 보임.

[지역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지역	고령인구비율	지역	고령인구비율	지역	고령인구비율
전국	20.0%	경기	16.6%	강원	25.4%
인천	17.7%	동두천	25.9%	춘천	21.5%
강화	38.9%	고양	17.2%	속초	24.0%
옹진	33.7%	파주	16.3%	철원	28.4%
		김포	15.7%	화천	27.8%
		양주	17.5%	양구	26.6%
		포천	26.3%	인제	25.3%
		연천	32.9%	고성	33.8%
		가평	31.7%		

※ 주: 고령인구비율 = (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 X 100(%)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고령인구비율」, 2024.12. 기준

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접경지역 발전에 올해 2,160억원 투자」, 2020.2.25.

[지역별 재정자립도]

지역	재정자립도	지역	재정자립도	지역	재정자립도
전국	43.3%	경기	55.1%	강원	25.2%
인천	49.6%	동두천	14.0%	춘천	18.9%
강화	11.9%	고양	33.7%	속초	18.4%
옹진	9.6%	파주	29.7%	철원	12.1%
		김포	33.8%	화천	7.6%
		양주	26.2%	양구	8.5%
		포천	22.8%	인제	8.8%
		연천	15.3%	고성	10.1%
		가평	18.3%		

※ 주: 재정자립도=(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

※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재정자립도」, 2024년 기준

셋째,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추가할 경우 접경지역 발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임. 개정안의 접경지역지원기금은 재원구조상 자체재원보다는 대부분을 정부의 출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에 의존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사업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추가하여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동 기금에 고정적으로 배분할 경우 동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정배분비율이 기관별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복권기금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체수입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복권수익금 지원 없이 자체 사업 운용이 가능한 기관에도 복권수익금이 배분되거나⁵⁾,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사업 수요가 있음에도 기관별 배분비율을 초과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음에 따라 제한된 규모로 지원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관별 정률 배분체계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 분야에서 국가재정 지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수익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집행은 취약계층 등 국민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운용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임.

이와 같이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법정배분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정배분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법정배분비율이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되어 있어 점경지역

5) 감사원,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2021. 5.

지원기금을 법정배분기관으로 추가하는 경우 복권수익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 기관·기금 등에 대한 배분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기존 수혜기관 등의 반발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복권수익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중단·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⁶⁾⁷⁾

한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6) 기획재정부도 법정배분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당초 법정배분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감사원 등에서 재정부운용의 칸막이화에 따른 경직성·비효율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현재 지역발전 등을 위해 법정배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중인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현재 법정배분 총 35% 중 지방자치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비율 합계 12.086%로 전체의 1/3이상 차지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 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 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 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 ----- ----- ----. ----- ----- ----- ----- ----- ----- -----.
1. ~ 11. (생략) <u><신설></u>	1. ~ 11. (현행과 같음) 12. 「 <u>접경지역 지원 특별법</u> 」 제27 조의2에 따른 <u>접경지역지원기금</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3

참고 1

현행 법정배분기관 현황

법정 배분기관	배분비율 (35% 기준)	용도
1. 과학기술진흥기금	12.583% (4.404%)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
2. 국민체육진흥기금	10.371% (3.630%)	▪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 국민체육시설 확충 ▪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 생활체육 보급 및 진흥 ▪ 국내외 체육대회 및 행사 지원
3. 근로복지진흥기금	5.310% (1.859%)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4.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56% (2.225%)	▪ 중소기업 창업지원 ▪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 지방중소기업 육성 ▪ 산업기반 조성
5. 국가유산보호기금	14.286% (5.000%)	▪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등
6. 지방자치단체	17.267% (6.043%)	▪ 지자체 문화·예술·복지 ▪ 지역개발사업 ▪ 그 밖에 공익목적 사업
7.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 업특별회계	17.267% (6.043%)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등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286% (1.500%)	▪ 사회복지사업
9.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5.846% (2.046%)	▪ 수목원, 휴양림, 수목장림 조성, 산림복지진흥 사업 등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428% (2.250%)	▪ 국가유공자 진료, 건강관리, 보호, 복지시설 운영 등
계	100% (35%)	

